

任員賞與金支給規程
(임원상여금지급규정)

주식회사 ○○○

임원상여금지급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와 「임원보수지급규정」에 따라 주식회사 ○○○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임원에 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- ① 이 규정은 「임원보수지급규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게 적용한다.
- ②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과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상여금의 구분)

임원의 상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정기상여금: 사업연도 중 미리 정한 시기에 기본급여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상여금
2. 성과상여금: 사업연도 개시 후 미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

제4조(급여지급기준으로서의 효력)

- ① 이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급여지급기준으로 하며, 회사는 이 규정과 이에 따른 결의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② 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은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2장 정기상여금

제5조(지급률과 지급시기)

- ① 정기상여금은 연간 월 기본급여의 ○○○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한다.
- ② 정기상여금의 지급률과 지급시기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, 지급시기는 연 ○회 이내로 한다.
- ③ 사업연도 중에 선임되거나 퇴임한 임원의 정기상여금은 해당 지급시기의 산정기간 중 재임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.

제3장 성과상여금

제6조(평가기준의 사전 확정)

-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 1. 평가지표(매출액, 영업이익,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등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)와 지표별 목표치
 2. 목표 달성 수준에 따른 지급률
 3. 개인별 평가 방법과 평가 주체
- ② 제1항의 사항은 결산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변경하지 못한다. 다만, 법령의 제정·개정,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대한 외부 사정으로 목표 달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에 이사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지급 한도)

- ①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총액은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(성과상여금을 비용으로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)의 ○○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② 임원 개인별 성과상여금은 해당 임원의 연간 기본급여의 ○○○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정기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은 기본급여와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보수총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8조(지급 결정과 지급)

- ① 성과상여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이 끝난 후 제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초로 이사회 결의로 개인별 지급액을 확정하여 지급한다.
- ② 제1항의 결의에서는 평가지표별 실적, 적용한 지급률 및 산출 근거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.
- ③ 평가 결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동일 기준 적용)

성과상여금의 평가기준과 지급률은 같은 직위의 임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며, 주주인 임원 또는 그 특수관계인 임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임원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0조(지급 대상과 제한)

- ①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임 중인 임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임기만료 또는 사망으로 퇴임한 임원에게는 재임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② 해임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쳐 퇴임한 임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환수)

성과상여금 지급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또는 부정이 있어 결산이 수정된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수정된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 지급된 성과상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2조(서류의 비치)

회사는 제5조,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사회 의사록과 평가자료를 본점에 비치하고 10년간 보존한다.

제13조(규정의 개정)

- ①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.
- ② 개정된 규정은 개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임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개정으로서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 년 월 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최초 사업연도의 특례)

회사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제5조제2항과 제6조제1항의 "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"를 "이 규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"로 본다.

【제정 · 개정 연혁】

구분	시행일	결의 주주총회일	주요 내용
제정	20 . . .	20 . . .	최초 제정
개정			